



제000회 국회(임시회)
제0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사회 회의록에의 의사 기록 의무화 등〉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1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사회 회의록에의 의사 기록 의무화 등(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2.

다.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사회 회의록에의 의사 기록 의무화 등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회의 - 이사회 의사결정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사결정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함 <신 설>	○ 회의 - 이사회 의사결정에 의한 의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사결정 방법)제2항을 각각 준용함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음 ·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 안건 · 의사(議事) · 출석한 임원의 성명 · 표결수 ·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반대이유 · 그 밖에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록에는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야 함 -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현행법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회의) ⑤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사결정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상법」 제391조의3제1항 및 제2항²⁾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자 및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의 내용에 의사(議事)를 추가하며,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회의록에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는 경우 회의록이 지나치게 간소하게 작성되어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기업보다 경영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2)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이사회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사 등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이 전부 기록되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화되고 기관의 영업상 정보 등이 노출될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타 법령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대해 발언내용을 전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³⁾은 공공기관이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대상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회의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등 주요회의’ 등으로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모든 이사회 회의록에 발언내용을 전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균형적 측면에서 과도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상법」 4)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 등 유사 기준과 비교시 모든 발언 기록을 의무화하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 5. (생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 4)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것은 규제 범위·수준이 다소 과도하며, 발언 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제약하고 형식적 발언으로 이어져 이사회 기능 위축도 우려된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회의) ① ~ ④ (생략) ⑤ 이사회 의사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사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제19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결----- -----제2항을-----. 제19조의2(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議事)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안건에 반대하는 임원과 그 반대 이유 7. 그 밖에 의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문 의 처

02)6788-5151